



연구지원센터 규정

[제목개정 2014. 1. 1]

제정일	1989. 7.21
개정일	2022. 3. 1
개정차수	11차
담당부서	연구지원센터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연구소는 동서울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연구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라 한다. (개정 2014. 1. 1, 2022. 3. 1)

제 2조 (위치) 센터는 본교 내에 둔다. (개정 2014. 1. 1)

제 3조 (목적) 센터는 각종 학술연구 단체와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동을 통하여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본교 내의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학협동연구 및 교내연구의 디자인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본교의 교육과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제 4조 (사업)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산업기술 발전에 필요한 기초 과학 기술연구
 2. 산업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한 연구
 3. (삭제 2022. 3. 1)
 4. (삭제 2022. 3. 1)
 5. 교수의 각종 교내 연구비 및 연구관련 경비 지원
 6. 대학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7. 연구원의 학술활동 지원 및 연구 업적 기록과 관리
 8. 교내연구와 교외연구의 디자인관련 기자재운용 지원
 9. 본교의 디자인관련 연구업무 지원
 10. 기타 본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전문개정 2014. 1. 1]

제 2 장 조 직

제 5조 (삭제 2008. 3.17)

제 6조 (센터장) ① 센터의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며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4. 1. 1]

제 7조 (삭제 2008. 3.17)

제 8조 (삭제 2008. 3.17)

제 9조 (삭제 2008. 3.17)

제10조 (연구원) 센터의 연구 활동과 연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3.17, 2014. 1. 1)

1. 전임연구원 : 본 센터에 소속되어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원 (개정 2014. 1. 1)
2. 겸임연구원 : 본교의 교원으로 센터의 연구를 겸임하는 연구원 (개정 2014. 1. 1)
3. 특별연구원 : 타 기관의 연구원을 센터의 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연구를 겸임하게 하는 연구원 (개정 2014. 1. 1)
4. 기타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

제11조 (직원) 센터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2.13, 2014. 1. 1)

제12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전임 교원, 겸임교원, 산업체인사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정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운영방침
2.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결산
3. 교내 연구비로 진행되는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4. 대학 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원고 접수(수집), 심사, 편집, 출판 및 발간
5. 학술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센터 운영결과 평가 및 개선방향 설정
7.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 1)

⑦ 위원회 산하에 심의사항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1]

제13조 (삭제 2014. 1. 1)

제 3 장 재 정

제14조 (교비 할당 예산) ① 교비에서 센터로 할당된 예산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1. 연구비 : 연구원의 과제 연구 지원비
2. 출판비 : 논문집, 기타 간행물 발간 및 배포 경비
3. 학술활동 지원비 : 연구계획서 및 보고서 심사비, 논문집 원고 심사비, 대외발표 지원비, 학술행사 개최 경비 등
4. 센터 운영비 : 회의비, 기자재 운영 소모품비, 사무용품 구입비 (개정 2014. 1. 1)

② 모든 교비 할당 예산의 관리 및 집행은 사무국에서 하며 예산의 집행은 센터 운영 세칙에 따른 센터의 청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개정 2014. 1. 1)

제15조 (삭제 2022. 3. 1)

제16조 (세출) 본 센터의 세출은 연구비, 학술활동 지원비, 대외 교류 및 홍보비, 기타 센터 운영 경비로 구분하며 그 집행은 센터 운영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4. 1. 1)

제17조 (삭제 2022. 3. 1)

제18조 (삭제 2014. 1. 1)

제19조 (시행세칙)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9. 2.13, 2014. 1. 1)

제20조 (연구활동 우수자 인센티브) 대학재정지원관련 외부사업 참여 우수자 및 연구활동 우수자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교내 연구과제 신청의 우선권을 부여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른 교내 연구과제보다 증액된 연구비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4. 1. 1, 제목개정 2021.12. 1]

제 4 장 [장삭제 2022. 3. 1]

제21조 ~ 제25조 (삭제 2022. 3. 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